

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하세요~!

반기신청·지급제도

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·하반기별로 신청·지급하는 제도

※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3월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

신청안내문을
받은 경우

신청방법

신청안내문을
받지 못한 경우

아래 방법 중 **하나**를 선택

- ① **모바일 안내문**
열람하기(홈택스앱 필요)
- ② **자동응답전화(ARS)**
 1544-9944
- ③ **홈택스(PC, 모바일앱)**
www.hometax.go.kr 또는
홈택스 모바일앱
- ④ **우편안내문**
QR코드 스캔(홈택스앱 필요)
- ⑤ **근로장려금 상담센터**
 1566-3636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
신청요건(뒷면 참조)이 충족된 경우
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세요

- ① 홈택스(PC, 모바일앱) 접속 후
로그인 하기
- ② 신청·제출 > (PC : 근로·자녀장려금)
>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> 신청하기

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
신청요건 및 방법을 동영상으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신청요건 동영상



신청방법 동영상

'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

반기신청 안내

-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, 둘 중 **하나만 신청**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	대상자	소득발생	신청기간	지급기한	지급액
선택	반기 신청	근로소득자	'22년 상반기	'22.9.1.~15.	'22년 12월 말	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			'22년 하반기	'23.3.1.~15.	'23년 6월 말	연간 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
	정기 신청	근로·사업· 종교인소득자	'22년 연간	'23.5.1.~31.	'23년 9월 말	연간 산정액의 100%

* 다만,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(배우자 포함)는 '23.8월(지급기한: '23.9월 말)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.

신청요건

-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에 **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**로서 아래 가구유형별 총소득·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반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



1) 부양자녀·직계존속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

2) 연간 총소득 :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·사업·종교인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3) 주택·토지·건축물·승용차·전세금·회원권·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·금융재산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